

서식 VI-19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기관명: (직인)

1. 평정자의 환산점 = 평정점 × 50/100, 확인자의 환산점 = 평정점 × 50/100
 2.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 각 목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하며,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리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리목의 평정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리목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목에 가산할 수 있다.

가. 수(95점 이상)	30퍼센트
나.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다.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라. 양(85점 미만)	10퍼센트